

1.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민첩하고 유연한 정부를 구현하기 위하여 개방형 직위를 직제 시행규칙으로 정하도록 한 것을 훈령·예규 및 그 밖의 방법으로 정하는 내용으로 「행정기관의 조직과 정원에 관한 규정」 및 「개방형 직위 및 공모 직위의 운영 등에 관한 규정」이 개정되고, 과학기술분야의 전문성이 정부의 경쟁력에 미치는 영향을 고려하여 기술직군의 명칭을 과학기술직군으로 변경하는 내용으로 「공무원임용령」이 개정됨에 따라 관련 규정을 정비하고, 총액인건비제를 활용하여 자율적으로 증원할 수 있는 정원의 한도를 총정원의 7퍼센트에서 10퍼센트로 상향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고자 질병관리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을 개정하려는 것임.

2. 참고사항

가. 관계법령 : 생략

나. 예산조치 : 별도조치 필요 없음

다. 합의 : 행정안전부, 법제처, 인사혁신처 등과 합의되었음

라. 기타 : 1) 신·구조문대비표

2) 입법예고(2023. 8. 00. ~ 8. 00.) 결과, 특기할 사항 없음

질병관리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질병관리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대변인) “서기관·기술서기관”을 “과학기술서기관·서기관”으로 한다.

제4조(종합상황실) “서기관·기술서기관”을 “과학기술서기관·서기관”으로 한다.

제5조(위기대응분석관)제2항 “서기관·기술서기관”을 “과학기술서기관·서기관”으로 한다.

제6조(기획조정관)제2항 “서기관·기술서기관”을 “과학기술서기관·서기관”으로 한다.

제7조(감사담당관) “서기관·기술서기관”을 “과학기술서기관·서기관”으로 한다.

제8조(운영지원과) “서기관·기술서기관”을 “과학기술서기관·서기관”으로 한다.

제9조(감염병정책국)제2항 “서기관·기술서기관”을 “과학기술서기관·서기관”으로 한다.

제10조(감염병위기대응국)제2항 “서기관·기술서기관”을 “과학기술서기관·서기관”으로 한다.

제11조(감염병진단분석국)제2항 “서기관·기술서기관”을 “과학기술서기관·서기관”으로 한다.

제12조(의료안전예방국)제2항 “서기관·기술서기관”을 “과학기술서기관·서기관”으로 하고, “보건연구관 또는 공업연구관”을 “공업연구관 또는 보건연구관”으로 한다.

제13조(만성질환관리국)제4항 “서기관·기술서기관”을 “과학기술서기관·서기관”으로 한다.

제15조(연구기획조정부)제2항 “서기관·기술서기관”을 “과학기술서기관·서기관”으로 한다.

제16조(미래의료연구부)제2항 “기술서기관”을 “과학기술서기관”으로 한다.

제17조(만성질환융복합연구부)제2항 “기술서기관”을 “과학기술서기관”으로 한다.

제18조(국립감염병연구소)제2항 “서기관·기술서기관”을 “과학기술서기관·서기관”으로 한다.

제22조(질병대응센터)제1항 및 제2항 중 “서기관·기술서기관”을 “과학기술서기관·서기관”으로 하고, “행정사무관·사회복지사무관·보건사무관·의료기술사무관·약무사무관·전산사무관·공업사무관·시설사무관”을 “공업사무관·보건사무관·의료기술사무관·약무사무관·시설사무관·전산사무관·행정사무관·사회복지사무관”으로 한다.

제23조(국립검역소)제1항 및 제2항 중 “서기관·기술서기관”을 “과학

기술서기관·서기관”으로 하고, “행정사무관·사회복지사무관·보건사무관·의료기술사무관·약무사무관·전산사무관·공업사무관·시설사무관”을 “공업사무관·보건사무관·의료기술사무관·약무사무관·시설사무관·전산사무관·행정사무관·사회복지사무관”으로 한다.

제24조(국립검역소 지소)제2항 “행정사무관·사회복지사무관·보건사무관·의료기술사무관·약무사무관·전산사무관·통계사무관·공업사무관·시설사무관”을 “공업사무관·보건사무관·의료기술사무관·약무사무관·시설사무관·전산사무관·행정사무관·사회복지사무관·통계사무관”으로 한다.

제27조제1항 중 “7퍼센트”를 “10퍼센트”로 한다.

제27조제2항 중 “9명(5급 4명, 6급 3명, 7급 2명)”을 “14명(3급 또는 4급 1명, 4급 4명, 5급 4명, 6급 3명, 7급 2명)”로 한다.

제28조제1항 중 “7퍼센트”를 “10퍼센트”로 한다.

제28조제4항에 후단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다만, 그 밖의 정원 중 5명(보건연구관 5명)은 임기제 공무원으로 임용할 수 있다.

제30조(개방형직위에 대한 특례)를 삭제한다.

별표5, 별표6, 별표7, 별표7의2, 별표8을 다음과 같이 한다.

부 칙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 질병관리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별표 5]

질병관리청 공무원 정원표(제27조제1항 본문 관련)

총계	481
정무직 계	1
청장(차관급)	1
일반직 계	480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일반직 또는 보건연구관	9
부이사관·서기관·과학기술서기관 또는 보건연구관	9
서기관·과학기술서기관 또는 보건연구관	31
서기관·과학기술서기관·보건연구관 또는 공업연구관	1
서기관·과학기술서기관·행정사무관·사회복지사무관· 보건사무관·의료기술사무관·약무사무관·전산사무관 ·공업사무관·시설사무관 또는 보건연구관	13
행정사무관·사회복지사무관·보건사무관·의료기술사무관 ·약무사무관·간호사무관·전산사무관·통계사무관· 공업사무관·시설사무관 또는 보건연구관	57
보건사무관 또는 보건연구관	47
행정주사·사회복지주사·보건주사·약무주사·간호주사 ·전산주사·통계주사·공업주사·시설주사·보건연구 사 또는 기록연구사	53
보건주사 또는 보건연구사	22

행정주사보 · 사회복지주사보 · 보건주사보 · 약무주사보 · 간호주사보 · 전산주사보 · 통계주사보 · 공업주사보 또는 시설주사보	57
행정서기 · 보건서기 · 간호서기 · 전산서기 · 통계서기 · 공 업서기 또는 시설서기	28
행정서기보 · 보건서기보 · 전산서기보 · 통계서기보 · 공업 서기보 또는 시설서기보	6
운전서기보	3
보건연구관	7
보건연구관 또는 공업연구관	43
보건연구사	91
보건운영서기보	2
전문경력관 가군(비상계획 담당)	1

■ 질병관리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별표 6]

질병관리청 공무원 정원표(제27조제1항 단서 관련)

총계	483
정무직 계	1
청장(차관급)	1
일반직 계	482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일반직 또는 보건연구관	9
부이사관·서기관·과학기술서기관 또는 보건연구관	9
서기관·과학기술서기관 또는 보건연구관	31
서기관·과학기술서기관·보건연구관 또는 공업연구관	1
서기관·과학기술서기관·행정사무관·사회복지사무관· 보건사무관·의료기술사무관·약무사무관·전산사무관 ·공업사무관·시설사무관 또는 보건연구관	13
행정사무관·사회복지사무관·보건사무관·의료기술사무관 ·약무사무관·간호사무관·전산사무관·통계사무관· 공업사무관·시설사무관 또는 보건연구관	57
보건사무관 또는 보건연구관	47
행정주사·사회복지주사·보건주사·약무주사·간호주사 ·전산주사·통계주사·공업주사·시설주사·보건연구사 또는 기록연구사	53
보건주사 또는 보건연구사	22

행정주사보 · 사회복지주사보 · 보건주사보 · 약무주사보 · 간호주사보 · 전산주사보 · 통계주사보 · 공업주사보 또는 시설주사보	57
행정서기 · 보건서기 · 간호서기 · 전산서기 · 통계서기 · 공업서기 또는 시설서기	28
행정서기보 · 보건서기보 · 전산서기보 · 통계서기보 · 공업 서기보 또는 시설서기보	6
행정서기보 · 보건서기보	2
운전서기보	3
보건연구관	7
보건연구관 또는 공업연구관	43
보건연구사	91
보건운영서기보	2
전문경력관 가군(비상계획 담당)	1

■ 질병관리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별표 7]

국립보건연구원 공무원 정원표(제28조제1항 본문 관련)

총계	210
일반직 계	210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일반직 또는 보건연구원	8
부이사관·서기관·과학기술서기관 또는 보건연구원	1
서기관·과학기술서기관 또는 보건연구원	6
서기관·과학기술서기관·행정사무관·보건사무관·의료 기술사무관·약무사무관·전산사무관·공업사무관·시 설사무관 또는 보건연구원	1
행정사무관·보건사무관·의료기술사무관·약무사무관· 간호사무관·전산사무관·공업사무관·시설사무관 또는 보건연구원	11
사서사무관	1
행정주사·사서주사·보건주사·약무주사·간호주사·전 산주사·공업주사·시설주사 또는 보건연구사	10
행정주사보·보건주사보·약무주사보·간호주사보·전산 주사보·공업주사보 또는 시설주사보	10
행정서기·사서서기·보건서기·간호서기·전산서기·공 업서기 또는 시설서기	2
행정서기보·보건서기보 또는 전산서기보	1
보건연구원	70
보건연구사	89

■ 질병관리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별표 7의2]

국립보건연구원 공무원 정원표(제28조제1항 단서 관련)

총계	212
일반직 계	212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일반직 또는 보건연구원	8
부이사관·서기관·과학기술서기관 또는 보건연구원	1
서기관·과학기술서기관 또는 보건연구원	6
서기관·과학기술서기관·행정사무관·보건사무관·의료 기술사무관·약무사무관·전산사무관·공업사무관·시 설사무관 또는 보건연구원	1
행정사무관·보건사무관·의료기술사무관·약무사무관· 간호사무관·전산사무관·공업사무관·시설사무관 또는 보건연구원	11
사서사무관	1
행정주사·사서주사·보건주사·약무주사·간호주사·전 산주사·공업주사·시설주사 또는 보건연구사	10
행정주사보·보건주사보·약무주사보·간호주사보·전산 주사보·공업주사보 또는 시설주사보	10
행정서기·사서서기·보건서기·간호서기·전산서기·공 업서기 또는 시설서기	2
행정서기보 또는 보건서기보	2
행정서기보·보건서기보 또는 전산서기보	1
보건연구원	70
보건연구사	89

■ 질병관리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별표 8]

질병대응센터 공무원 정원표(제28조제2항 관련)

총계	710
일반직 계	710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일반직 또는 보건연구관	2
부이사관·서기관·과학기술서기관 또는 보건연구관	4
서기관·과학기술서기관 또는 보건연구관	25
서기관·과학기술서기관·행정사무관·사회복지사무관 · 보건사무관·의료기술사무관·약무사무관·전산 사무관·공업사무관·시설사무관 또는 보건연구관	4
행정사무관·사회복지사무관·보건사무관·의료기술 사무관·약무사무관·간호사무관·전산사무관·공업 사무관·시설사무관 또는 보건연구관	29
보건사무관 또는 보건연구관	19
행정주사·사회복지주사·보건주사·의료기술주사· 약무주사·간호주사·전산주사·공업주사·시설주사 또는 보건연구사	100
보건주사 또는 보건연구사	14
행정주사보·사회복지주사보·보건주사보·의료기술 주사보·약무주사보·간호주사보·전산주사보·공업 주사보 또는 시설주사보	156
행정서기·사회복지서기·보건서기·의료기술서기· 간호서기·전산서기·공업서기 또는 시설서기	221

행정서기보 · 사회복지서기보 · 보건서기보 · 전산서기보 · 공업서기보 또는 시설서기보	69
운전서기보	6
위생서기보	1
방호서기보	2
보건연구관	29
보건연구사	23
보건운영서기보	5
기계운영서기보	1

신 · 구조문대비표

현행	개정안
제3조(대변인) 대변인은 <u>서기관</u> · <u>기술서기관</u> 또는 보건연구 관으로 보한다.	제3조(대변인) 대변인은 <u>과학기술</u> <u>서기관</u> · <u>서기관</u> 또는 보건연구관 으로 보한다.
제4조(종합상황실) 종합상황실장 은 부이사관 · <u>서기관</u> · <u>기술서</u> <u>기관</u> 또는 보건연구관으로 보한다.	제4조(종합상황실) 종합상황실장은 부이사관 · <u>과학기술서기관</u> · <u>서기관</u> 또는 보건연구관으로 보한다.
제5조(위기대응분석관) ① (생략) ② 위기대응분석관 밑에 위기대응 역량개발담당관 · 위기분석담당 관 · 역학조사분석담당관 및 위 기대응연구담당관을 두되, 각 담당관은 <u>서기관</u> · <u>기술서</u> <u>기관</u> 또는 보건연구관으로 보한다.	제5조(위기대응분석관) ① (현행과 같음) ② 위기대응분석관 밑에 위기대 응역량개발담당관 · 위기분석담당 관 · 역학조사분석담당관 및 위 기대응연구담당관을 두되, 각 담당관은 <u>과학기술서기관</u> · <u>서</u> <u>기관</u> 또는 보건연구관으로 보한다.
제6조(기획조정관) ① (생략) ② 기획조정관 밑에 기획재정 담당관 · 행정법무담당관 · 국제 협력담당관 및 정보통계담당관을 두되, 기획재정담당관은 부이 사관 · <u>서기관</u> · <u>기술서기관</u> 또 는 보건연구관으로 보하고, 행정법무담당관 · 국제협력담당 관 및 정보통계담당관은 <u>서기</u> <u>관</u> · <u>기술서기관</u> 또는 보건연 구관으로 보한다.	제6조(기획조정관) ① (현행과 같음) ② ----- ----- ----- ----- -- <u>과학기술서기관</u> · <u>서기관</u> 또 는 보건연구관으로 보하고, 행정 법무담당관 · 국제협력담당관 및 정보통계담당관은 <u>과학기술서</u> <u>기관</u> · <u>서기관</u> 또는 보건연구관 으로 보한다.

제7조(감사담당관) 감사담당관은
부이사관·서기관·기술서기관
또는 보건연구관으로 보한다.

제8조(운영지원과) 운영지원과장
은 부이사관·서기관·기술서기
관 또는 보건연구관으로 보한다.

제9조(감염병정책국) ① (생 략)
② 감염병정책국에 감염병정
책총괄과·감염병관리과·인
수공통감염병관리과·결핵정
책과 및 에이즈관리과를 두되,
감염병정책총괄과장은 부이
사관·서기관·기술서기관
또는 보건연구관으로 보하고,
감염병관리과장·인수공통감염
병관리과장·결핵정책과장 및
에이즈관리과장은 서기관·기
술서기관 또는 보건연구관으로
보한다.

제10조(감염병위기대응국) ①
(생 략)
② 감염병위기대응국에 위기대응
총괄과·검역정책과·의료대
응지원과·비축물자관리과 및
신종감염병대응과를 두되,
위기대응총괄과장은 부이사

제7조(감사담당관)-----
-----과학기술서기관·서기관
-----.

제8조(운영지원과) -----
-----과학기술서기관·서기관
-----.

제9조(감염병정책국) ① (현행과 같음)
② -----

과학기술서기관·서기관-----

-----과학기술서기관, 서기관

-----.

제10조(감염병위기대응국) ①
(현행과 같음)
② -----

관 · 서기관 · 기술서기관 또는 보건연구관으로 보하고, 검역 정책 과 장 · 의료대응지원과장 · 비축물자관리과장 및 신종 감염병 대응과장은 서기관 · 기술서기관 또는 보건연구관으로 보한다.

제11조(감염병진단분석국) ① (생 략)

② 감염병진단분석국에 감염병 진단관리총괄과 · 세균분석과 · 바이러스분석과 · 매개체분석과 · 고위험병원체분석과 및 신종병원체분석과를 두되, 감염병진단관리총괄과장은 부이사관 · 서기관 · 기술서기관 또는 보건연구관으로 보하고, 세균분석과장 · 바이러스분석과장 · 매개체분석과장 · 고위험병원체분석과장 및 신종병원체분석과장은 서기관 · 기술서기관 또는 보건연구관으로 보한다.

제12조(의료안전예방국) ① (생 략)

② 의료안전예방국에 예방접종관리과 · 의료감염관리과 · 항생제내성관리과 · 백신수급과 · 의

과학기술서기관 · 서기관-----

-----과학기술서기관 · 서기관

-----.

제11조(감염병진단분석국) ① (현행과 같음)

② -----

과학기술서기관 · 서기관-----

-----과학기술서기관 · 서기관

-----.

제12조(의료안전예방국) ① (현행과 같음)

② -----

료방사선과 및 생물안전평가
과를 두되, 예방접종관리과장
은 부이사관·서기관·기술
서기관 또는 보건연구관으로
보하고, 의료감염관리과장·항
생제내성관리과장·백신수급
과장 및 생물안전평가과장은
서기관·기술서기관 또는 보건
연구관으로 보하며, 의료방사
선과장은 서기관·기술서기관
·보건연구관 또는 공업연구관
으로 보한다.

제13조(만성질환관리국) ① (생 략)

②·③ (생 략)

④ 만성질환관리국에 만성질환
관리과·만성질환예방과·희
귀질환관리과·건강영양조사분
석과·건강위해대응과·손상
예방관리과 및 미래질병대비과를
두되, 만성질환관리과장은 부
이사관·서기관·기술서기관
또는 보건연구관으로 보하고,
만성질환예방과장·희귀질환관
리과장·건강영양조사분석과장
·건강위해대응과장·손상예방

-----과학기술서기관
·서기관-----

-----과학기술서기관·서기관---

-----과학기술서기관·서기관
·공업연구관 또는 보건연구관
-----.

제13조(만성질환관리국) ① (현행과
같음)

②·③(현행과 같음)

④ -----

---과학기술서기관·서기관---

관리과장 및 미래질병대비과장은 서기관·기술서기관 또는 보건연구관으로 보한다.

제15조(연구기획조정부) ① (생략)

② 연구기획조정부에 연구기획과·연구지원과 및 운영지원과를 두되, 연구기획과장은 부이사관·서기관·기술서기관 또는 보건연구관으로 보하고, 연구지원과장 및 운영지원과장은 서기관·기술서기관 또는 보건연구관으로 보한다.

제16조(미래의료연구부) ① (생략)

② 미래의료연구부에 바이오빅데이터과·바이오뱅크과·유전체역학과·유전체연구기술개발과 및 헬스케어인공지능연구과를 두되, 바이오빅데이터과장 및 바이오뱅크과장은 기술서기관 또는 보건연구관으로 보하고, 유전체역학과장·유전체연구기술개발과장 및 헬스케어인공지능연구과장은 보건연구관으로 보한다.

---과학기술서기관·서기관---
-----.

제15조(연구기획조정부) ① (현행과 같음)

② -----

과학기술서기관·서기관-----

--과학기술서기관·서기관--
-----.

제16조(미래의료연구부) ① (현행과 같음)

② -----

-----과학기술서기관-----

-----.

제17조(만성 질환 융복합연구부)

① (생략)

② 만성질환융복합연구부에 심혈관질환연구과, 뇌질환연구과, 내분비·신장질환연구과, 호흡기·알레르기질환연구과, 난치성질환연구과 및 재생의료안전관리과를 두되, 심혈관질환연구과장, 뇌질환연구과장, 내분비·신장질환연구과장, 호흡기·알레르기질환연구과장 및 난치성질환연구과장은 보건연구관으로 보하고, 재생의료안전관리과장은 기술서기관 또는 보건연구관으로 보한다.

제18조(국립감염병연구소) ①

(생략)

② 국립감염병연구소에 감염병연구기획총괄과, 신종바이러스연구센터, 감염병연구센터, 공공백신개발지원센터를 두되, 감염병연구기획총괄과장은 서기관·기술서기관 또는 보건연구관으로 보하고, 신종바이러스연구센터장, 감염병연구센터장 및 공공백신개발지

제17조(만성질환융복합연구부) ①

(현행과 같음)

[illegible]

제18조(국립감염병연구소) ①

(현행과 같음)

②

과학기술서기관 · 서기관

원 센터장은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일반직공무원 또는 연구직 공무원으로 보하되, 그 직위의 직무등급은 나등급으로 한다.

제22조(질병대응센터) ① 센터장은 부이사관·서기관·기술서기관 또는 보건연구관으로 보한다. 다만, 수도권질병대응센터장은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일반직 또는 연구직공무원으로 보하되, 그 직위의 직무등급은 나등급으로 한다.

② 질병대응센터(이하 이 조에서 “센터”라 한다)에 운영지원과·감염병대응과·진단분석과 및 만성질환조사과를 두되, 운영지원과장 및 감염병대응과장은 서기관·기술서기관 또는 보건연구관으로 보하고, 진단분석과장은 보건연구관으로 보하며, 만성질환조사과장은 서기관·기술서기관·행정사무관·사회복지사무관·보건사무관·의료기술사무관·약무사무관·전산사무관·공업사무관·시설사무관 또는 보건연구관

-----.

제22조(질병대응센터) ①-----

-----과학기술서기관·서기관

-----.

② -----

-----과학기술서기관·서기관

-----과학기술서기관·서기관·공업사무관·보건사무관·의료기술사무관·약무사무관·시설사무관·전산사무관·행정사무관·사회복지사무관 -----

으로 보한다.

다만, 수도권질병대응센터의
만성질환조사과장은 서기관·
기술서기관 또는 보건연구관으로
보한다.

제23조(국립검역소) ① 검역소장
은 서기관·기술서기관 또는
보건연구관으로 보한다. 다만,
국립인천공항검역소장은 고위
공무원단에 속하는 일반직
또는 연구직공무원으로 보하
되, 그 직위의 직무등급은 나
등급으로 한다.

② 국립인천공항검역소에 서무과
· 검역1과 및 검역2과를 두고,
국립부산검역소에 서무과 및
검역과를 두며, 국립인천검역소
및 국립울산검역소에 검역과
를 두되, 국립인천공항검역소
의 서무과장은 서기관·기술서
기관·행정사무관·사회복지사
무관·보건사무관·의료기술
사무관·약무사무관·전산사
무관·공업사무관·시설사무
관 또는 보건연구관으로, 검역
1과장 및 검역2과장은 서기관·

-----과학기술서기관·
서기관-----
-----.

제23조(국립검역소)① -----
과학기술서기관·서기관-----

-----.

② -----

과학기술서기관·서기관·공업
사무관·보건사무관·의료기
술사무관·약무사무관·시설사
무관·전산사무관·행정사무관
·사회복지사무관 -----

-----과학기술

기술서기관 또는 보건연구관으
로 보하고, 국립부산검역소의
사무과장·검역과장, 국립인천
검역소 및 국립울산검역소의
검역과장은 행정사무관·사회
복지사무관·보건사무관·의
료기술사무관·약무사무관·
전산사무관·공업사무관·시
설사무관 또는 보건연구관으
로 보한다.

제24조(국립검역소 지소) ① (생략)

② 지소에는 지소장 1명을 두되,
지소장은 행정사무관·사회복
지사무관·보건사무관·의료기
술사무관·약무사무관·전산사
무관·통계사무관·공업사무
관·시설사무관 또는 보건연구
관으로 보한다.

제27조(질병관리청에 두는 공무원의 정원)

① 질병관리청에 두는 공무원
의 직급별 정원은 별표 5와 같다.
다만, 「질병관리청과 그 소속
기관 직제」 제34조제1항 단서
에 따라 총정원의 7퍼센트를 넘
지 않는 범위에서 따로 정하는

서기관·서기관 -----

-----공업사무관·보건사무관
·의료기술사무관·약무사무관
·시설사무관·전산사무관·행정
사무관·사회복지사무관 -----

-----.

제24조(국립검역소 지소) ① (현
행과 같음)

② -----
-----공업사무관·보건사무관
·의료기술사무관·약무사무관
·시설사무관·전산사무관·행
정사무관·사회복지사무관·통
계사무관 -----
-----.

제27조(질병관리청에 두는 공무원의 정원)

① -----

-----10퍼센트-----

공무원의 정원은 별표 6과 같으며, 별표 6의 정원 중 2명(행정서기보 또는 보건서기보 2명)은 임기제공무원으로 임용한다.

- ② 질병관리청에 두는 공무원의 정원 중 홍보업무를 담당하는 2명(7급 1명, 8급 1명), 소송업무를 담당하는 1명(5급 1명) 및 그 밖의 정원 중 9명(5급 4명, 6급 3명, 7급 2명)은 임기제공무원으로 임용할 수 있다.

제28조(소속기관에 두는 공무원의 정원)

① 국립보건연구원에 두는 공무원의 정원은 별표 7과 같다. 다만, 「질병관리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 제35조제1항 단서에 따라 총정원의 7퍼센트를 넘지 않는 범위에서 따로 정하는 공무원의 직급별 정원은 별표 7의2와 같으며, 별표 7의2의 정원 중 2명(행정서기보 또는 보건서기보 2명)은 임기제공무원으로 임용한다.

②·③ (생략)

- ④ 질병관리청의 소속기관에 두는 공무원의 정원 중 국립보건연구원

-----.

- ② -----

그 밖의 정원 중 14명(3급 또는 4급 1명, 4급 4명, 5급 4명, 6급 3명, 7급 2명)은-----
-----.

제28조(소속기관에 두는 공무원의 정원)

①-----

-----10퍼센트

-----.

②·③ (현행과 같음)

- ④ -----

소속 근로자의 안전·보건 관리
업무를 담당하는 2명(7급 2명)은
임기제공무원으로 임용한다.

(후단신설)

제30조(개방형직위에 대한 특례)

① 「질병관리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 제36조에서 “보건복지
부령으로 정하는 개방형 직위”란
다음 각 호의 직위를 말한다.

1. 국립보건연구원장

2. 국립감염병연구소장

3. 공공백신개발지원센터장

② 「개방형직위 및 공모직위의
운영 등에 관한 규정」 제3조
제2항에 따른 과장급 직위로
대변인, 위기분석담당관, 감사
담당관, 희귀질환관리과장, 건
강영양조사분석과장, 유전체역학과
장, 유전체연구기술개발과장, 헬스
케어인공지능연구과장, 치료임상
연구과장 및 백신임상연구과장을
지정하되, 임기제공무원으로 보
할 수 있다.

다만, 그 밖의 정원 중 5명(보건
연구원 5명)은 임기제 공무원으로
임용할 수 있다.

< 삭 제 >